

산학협력단 연구실 운영 지침

제1조 (목적) 이 지침은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와 관련된 연구실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용어의 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.

- ① “연구실”이라 함은 연구실 책임자와 연구원이 연구 및 연구에 필요한 실험·실습 등 수행하는 장소를 말한다.
- ② “연구실 책임자”라 함은 해당 연구실에서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원을 직접 지도, 관리,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자로서, 각 연구실의 담당교수 및 지도교수를 말한다.
- ③ “연구원”이라 함은 연구실에 소속되어 학업·연구 및 실험·실습을 직접 수행하는 자로써, 본교 학생 및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 체결된 연구원도 이에 포함한다.

제3조 (연구실 목표) 연구실 책임자는 연구실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, 연구원이 목표에 따라 자유롭게 연구실을 선택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이때 연구실의 목표는 연구실 책임자의 전공 분야에 맞게 설정하여, 지도교수로서 연구원의 학업 및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.

제4조 (연구실 운영) 연구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된다.

- ① 연구실 책임자 및 연구원은 본교 「연구실 안전관리 규정」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.
- ② 연구실 책임자는 연구원에게 연구공간 및 안전한 연구환경을 제공하여, 학업 및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.
- ③ 연구실 책임자는 연구원과 협의하여 연구원의 소정근로일수를 정한다.
- ④ 연구실 책임자는 연구원에게 충분한 휴게시간을 제공하여 과도한 연구투입을 지양하며, 학업과 연구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.
- ⑤ 연구원은 연구실 책임자로부터 받은 담당업무를 신의와 성실에 따라 수행한다.
- ⑥ 연구원은 본인과 무관한 업무 등 부당 업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, 연구실 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5조 (기타) 이 지침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지침은 2020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.